#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9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위성곤・박지원・서영교

허 영·주철현·박희승

문대림 · 강유정 · 김한규

조인철 · 위성락 의원

(11인)

####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의고층화 및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목조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는 국내에도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피해와도 무관하지 않아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대응 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건축물에 목재이용을 활성화하 는 것임.

외국의 경우 목조건축의 활성화하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공학목재 및 목조건축 기술개발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

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및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이용촉진 관련 입법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실례로, 미국의 경우 「목재증진법」(Timber Innovation Act)을 마련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주는 2 009년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제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은 2010년부터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일본내 공공목조건축물의수는 해마다 늘고 목재 자급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형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자원 조건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재자원을 연료용 및 펄프 또는 보드(board)재료 의 원재료인 목분, 칩 등의 낮은 부가가치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함께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건축 자재인 목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단열 및 흡습에도 성능이 우수하여 주 택, 노인복지시설, 유아시설 및 교육시설 등 주거용과 사회 주요시설 에 적용하는데 최적의 건축 재료이므로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함.

이에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의 산 림자원환경이 개선되어 국산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이 가능함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발맞추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본 법 제정으로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이용이 촉진되면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것이고, 임업기계 및 목재가공 설비와 IT 기술을 접목한 목재이용의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목재의 생산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활용 및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하고, 나아가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한 목재자급률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촉진 및 임업·목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산림청장은 매년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공공

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을 위한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생산업의 인정, 등록, 관리, 연구개발·보급, 품질인증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에 활용되는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과 해외교역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 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7조).
- 아.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에 대한 수요와 지역간벌재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음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산림청장은 국산재를 이용한 건축물의 목조화 및 목재이용촉진과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재이용 건축용 고 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로 지정 ·조성할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차.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운영 등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목조건 축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 카. 그 밖의 청문, 수수료 징수,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의 공무 원 의제 및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

까지).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활용 및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하고, 나아가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한 목재자급률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임업·목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건축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및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 2. "목재이용촉진"이란 목재이용 문화를 진흥하고, 목재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촉진하여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경제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목조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목재 또는 목재를 가공하여 제작된 구조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된 건축물을 말한다.

- 4.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이란 목구조설계가 가능한 구조성능이 표시되는 제품이나 일반 목재에 물리적·화학적 가공처리 또는 등급구분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부여한 목재 및 건축용 목질 재료를 말한다.
- 5. "목재산업진흥지구"란 건축물의 목조화 및 국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6.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란 국산목재의 자급률 향상과 국내 산림의 임분 구조의 불균일성 해결 및 기후변화 대응, 국산 목재이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단지를 말한다.
- 7. "목조건축전용단지"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들어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용단지로서 제24조에 따라 지정되는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 공건축물에 목재이용촉진과 목재자급률의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목재 및 목재제품 생산 · 유통업자와 목조건축 시공자 및 관리자

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계획 등

- 제5조(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 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공공 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 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과 관련 한 목재산업종사자, 해당 목재이용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 항
  - 3. 목구조건축사, 목구조기술사, 목조주택 건축업자 및 목재가공 인 력 등 목조건축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 4.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5. 목재산업진흥지구·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목조건축전용단지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 6. 목조건축용 목재가공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 7.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경제적·산업적 여건 변화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변경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목조건축 및 그와 관련한 목재이용촉진 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목재산업진 흥지구·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목조건축전용단지의 현황, 공공목조 건축물의 목재이용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 및 목재이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④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한다.
- 제7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및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목재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목재이용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목재공학·목조건축 및 바이오매스, 도시목질화 분야의 전문가로 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이용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 3. 산림청의 목재산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4. 건축, 도시계획, 실내주거환경 관련 전문가로서 대통령소속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7.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에서 각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인정 등

- 제9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인정) ① 산림청장은 목조건 축을 위한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 당 목재제품생산업에 대한 인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자는 건축용 고도가공 목 재제품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 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 대한 인정, 인정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의 인정의 내용, 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을 등록할 수있다.
  - 1.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시설
  -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②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등록, 등록의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 제11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3. 시설 및 인력기준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자가 제9조에 따른 시설, 인력

- 기준 및 인정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자 및 관련 종 사자에게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및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에 활용되는 공학목재 생산 및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의 내용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④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사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제 9조에 따른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인정,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업자 및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과 목조건축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지원 을 할 수 있다.
  - 1.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을 하는 자의 생산,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2. 공공건축물의 목조화와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 관련 공익사업 의 수행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조화와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자금,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을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화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 연구개발 및 기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미이용목재를 이용하여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 연구개발 및 기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산림청장은 건축 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자의 해외교역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자의 목재제품 관련 해외시장 개척
  - 2. 외국산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인증 획득 지원
  - 3.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7조(우선구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 건축물을 위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받은 목재제품
  -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

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목재제품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시설을 등록·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목조건축전문가의 활용)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용 단지를 조성·운영하여 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목조건축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문 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문가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운영

- 제20조(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에 대한 수요와 지역간벌재 이용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 체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산업진흥지구 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목재산업진 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이 목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목재산업진흥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 2. 목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와 면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기준) ① 목재산업진흥지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목재이용촉진계획의 추진방향

-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또 는 시험림
- 3. 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이용계획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 4. 대상지의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 5. 국민 주거생활의 기본권과 도시의 필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진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목재산업진흥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목재산업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 용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2. 해당 목재산업진흥지구에서 목조건축전용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 진상황으로 보아 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의 조성 원칙) ① 산림청장은 국산재를 이용한 건축물의 목조화 및 목재이용촉진과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재이용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②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화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재산업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증 진할 수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 2.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및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 3. 목질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로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 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구비할 것
- 4.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 제24조(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 원칙) ① 산림청장은 특정 지역 내에 건축물의 목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목조건축전용단 지(이하 "전용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② 전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건강증진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 2. 전용단지는 도시목질화 기능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접근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것
- 3. 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및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 4. 목질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로 최대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 5.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 6. 전용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 7. 전용단지의 이용자에게 목재문화·에너지, 목재교육 및 일자리창 출 등의 종합적인 목재이용촉진을 제공하기 위한 목재를 이용한 공공건축물 시설 등을 구비할 것
- 8. 그 밖에 전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적합할 것
- 제25조(전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전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제31조에 따른 목조건축진흥센터

-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제26조(전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전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전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시행자
  - 2. 전용단지의 규모, 시설 및 운영계획
  - 3. 기존 건축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 4. 전용단지 조성에 따른 목재이용촉진 계획
  - 5. 목조건축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에 필요한 사업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김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및 제24조에 따른 조성 원칙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전용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 2. 전용단지의 조성 목적
- 3. 전용단지 내 목조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 4.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목재수급 대책
- 5. 전용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 6. 목조건축물 활용 및 목재이용촉진 계획
- 7. 토지 소유자 ·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8. 복지시설에 대한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내용
- 9. 목조건축전문가의 활용
-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 12. 그 밖에 전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인적사항,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및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

- 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 승인 신청의 내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본다.
  -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과의 협의 또는 승인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 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 는 신고
-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5장 목조건축진흥센터

- 제31조(목조건축진흥센터의 설립 등) ①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운영 등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목조건축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하다)를 설립하다.
  - ② 진흥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센터가 아닌 자는 목조건축진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진흥센터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정관) ① 진흥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진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진흥센터가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제33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센터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④ 진흥센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34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업무)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가가 조성한 전용단지의 운영
- 2. 목재이용촉진 시설의 조성 및 운영
- 3. 진흥센터가 조성한 공공목조건축물의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5.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6.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 등록증의 발급·관리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 7. 전용단지의 타당성조사
- 8. 목재이용촉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9. 국내외 목조건축 및 도시목질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 10. 목조건축, 목재이용촉진 및 도시목질화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1. 그 밖에 목조건축, 목재이용촉진 및 도시목질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6조(목재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진흥센터는 진흥센터가 운영하는 공공목조건축시설에서 목재이용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목조건축·목재이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등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촉진 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진흥센터의 운영비) 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진흥센터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 금
  - 4. 기부금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 6. 그 밖의 수입금
- 제38조(예산과 결산) ① 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진흥센터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진흥센터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

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 ④ 진흥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충당하고 남는 이익금은 산림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제39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35조 각 호에 따른 진흥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 ② 진흥센터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 제4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 등록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3.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 관련 사업 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3.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센터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5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벌칙

-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공목조건축물 및 시설을 조성·운영한 자
  - 2.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공공목조건축물 및 시설을 조성·운영한 자
  - ②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목조건 축전용단지를 변경조성·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공목조건축물 및 시설을 변경조성·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용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조건축전용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45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목조건축진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진홍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

- 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목조건축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목조건축진흥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설립 당시의 목조건축진흥센터장은 산림청장이 임명한다.